

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

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전기)

제 1 조(목적)

이 특수조건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「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전기)」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전기공사업법」, 계약예규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및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, 전기설비 관련 기준과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를 적용한다.
-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며,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- ③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계약예규, 설계도서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.

제 3 조(공사개요)

- ① 공 사 명 : 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전기)
- ② 공사현장 :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, 통영적십자병원
- ③ 공사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
- ④ 공사내용 : 전기설비 철거, 전력간선공사, 전등설비공사, 전열설비 및 냉난방 전원설비공사 등 설계도서에 포함된 전기공사 일체
- ⑤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관계 법령, 설계도서 및 지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.

제 4 조(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, 시방서, 공사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목적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, 공구, 계측기, 안전장비 및 현장관리체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의료기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자, 보호자,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과 병원의 진료·검사·입원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전, 의료장비 작동중지, 시설물 파손 또는 제 3 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5 조(현장 및 설계서 확인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기존 수·배전설비, 분전반, 전력간선, 배관·배선, 접지계통, 비상전원 및 UPS 계통 등 현장 전기설비의 상태와 공사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기존 회로의 용도와 전원계통이 불명확한 경우 임의로 철거·절단·분리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 또는 병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③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누락·오류 등으로 시공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(착공 및 공정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
 2.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
 3.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
 4. 정전·복전 계획 및 임시전원 공급계획(해당하는 경우)
 5. 환자·방문객 안전통로 및 출입통제계획
 6. 소음·분진·진동 억제계획 및 화재예방계획
 7.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

8.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

- ②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만회공정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타 공종과의 공정협의)

- ① 본 전기공사는 건축 및 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와 동시에 또는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배관·배선, 천장 내부 공간, 기기 위치, 냉난방 전원, 관통부 등 공정간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타 공종과의 공정 간섭 또는 시공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로 타 공종의 시설물을 철거·이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8 조(병원 운영 중 공사)

- ①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환자 및 병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를 단계적·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진료·검사·입원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, 천공, 철거 및 전원차단 작업은 발주기관과 작업일시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안전하게 분리하고 공사자재, 전선, 공구 등이 환자 및 방문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정전 및 복전관리)

- ① 병원 전기설비의 정전이 필요한 작업은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 없이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정전작업 계획에는 정전 대상과 범위, 작업시간, 영향받는 설비, 임시전원 또는 대체방안, 작업책임자, 비상연락망 및 복전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정전 전에는 해당 부서 및 관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, 의료장비·전산장비·냉장 및 기타 중요설비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복전 시에는 배선상태, 절연상태, 차단기 상태 및 부하측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전원을 투입하여야 하며, 복전 완료 후 관계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활선작업 및 전기안전)

- ① 활선상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전기설비 철거·결선·접속 작업 전에는 전원차단 및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잠금·표찰 등 재통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전기작업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, 절연공구 및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하며, 감전·아크·화재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비상전원 및 중요전원 보호)

- ① 병원의 비상전원, UPS, 의료장비 전원 및 기타 중요부하 회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차단·이설·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중요부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임시전원 또는 대체전원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공사 중 기존 비상전원 또는 UPS 계통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기존 전기설비의 보호 및 철거)

- ① 계약상대자는 존치하는 전기설비, 통신·소방 관련 배선, 의료장비 및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고 식별하여야 한다.
- ② 철거 대상 전선·케이블·기기 등은 사용 중인 회로와 명확히 구분한 후 철거하여야 하며, 철거 후 노출된 충전부 또는 배선 끝단은 안전하게 절연·마감하여야 한다.
- ③ 철거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또는 타 계통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자재의 사용 및 승인)

-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, 전선관, 배선기구, 차단기, 분전반, 조명기구 등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제품사양서, 시험성적서, 인증서, 견본 및 기타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승인받지 않은 자재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미 반입 또는 시공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④ 특정 제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(배관·배선 및 기기설치)

- ① 배관·배선, 케이블 포설, 분전반 및 배선기구 설치는 설계도서, 시방서 및 관계 기준에 따라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- ② 케이블 및 배선은 용도별·회로별로 식별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회로명, 전원출처 및 부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분전반의 회로명판과 회로표는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, 예비회로와 사용회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- ④ 천장 내부 및 은폐구간의 배선은 다른 설비와 간섭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지·보호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접지 및 보호조치)

- ① 접지가 필요한 전기설비는 설계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라 접지하여야 하며, 접지선의 단선·탈락 또는 부적합한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.
- ② 금속제 외함, 분전반, 배관 및 기타 접지 대상 시설물은 필요한 보호접지 또는 등전위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접지저항 등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적정한 계측기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관통부 및 방화구획 복구)

- ① 배관·배선 공사를 위해 벽체, 슬래브, 천장 등 기존 시설물을 천공하거나 관통한 경우 구조·방수·방화성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
-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·케이블 등의 관통부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방화충전재 등으로 복구하여 방화능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천공 및 코어작업 전에는 기존 매립배관·배선 등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시험·검사 및 시운전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설비별로 필요한 절연저항, 접지저항, 회로 연속성, 극성,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동작, 전압 및 기타 필요한 시험·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비상전원, UPS 또는 전원절체와 연계되는 설비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능시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·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, 시험결과서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법령상 사용전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은폐공사의 확인)

- ① 천장·벽체·바닥 내부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배관·배선 및 접지공사는 은폐하기 전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은폐공정의 시공 전·중·후 사진을 촬영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발주기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은폐한 경우 발주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개방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9 조(안전·보건 및 화재예방)

- ① 계약상대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 착수 전 감전, 추락, 낙하, 화재, 전동공구 사용 등 작업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
- ③ 화기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소화기 배치, 가연물 제거, 화재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공사 중 사고 또는 전기설비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설계변경 및 추가공사)

-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상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누락·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1 조(폐기물 및 현장정리)

- ① 철거한 전선, 케이블, 배관, 조명기구, 분전반 자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분리·보관·반출하여야 한다.
- ② 재사용 또는 발주기관에 인계하도록 지정된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폐기물 반출은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반출시간 및 동선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하도급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·일괄하도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·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안전관리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23 조(공사근로자 및 노무비 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노무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발주기관이 노무비,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등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)

-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금액 산정 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국민건강보험료 : 1,857,155 원
 - 2. 국민연금보험료 : 2,453,821 원
 - 3.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244,030 원
 - 4. 퇴직공제부금비 : 1,188,166 원
 - 5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1,507,062 원
- ②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 법령 및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.
-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보전비 등 관계 법령상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과 설계내역에 따라 정산한다.

제 25 조(기성 및 대가 지급)

- ① 기성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, 공사사진, 노무비 지급내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관계 법령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산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6 조(준공검사 및 준공서류)

-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의 결선, 시험, 표시, 청소 및 현장정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준공검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
2. 준공내역서 및 최종 준공도면
3. 공사 전·중·후 및 은폐공정 사진대장
4.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·인증서·제품사양서
5. 절연저항·접지저항 등 각종 시험·검사 결과서
6. 분전반 회로표 및 주요 회로·케이블 표시자료
7.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자료
8.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(해당하는 경우)
9. 설치기기의 사용설명서·보증서 및 유지관리자료
10. 관계 법령상 검사·확인 서류(해당하는 경우)
11. 하자보수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

③ 준공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준공도면 및 회로표시)

- ① 준공도면은 실제 시공된 전력간선, 배관·배선, 분전반, 배선기구 및 주요 전기설비의 위치와 회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 중 설계도서와 달리 변경된 배선경로, 회로번호 또는 기기 위치가 있는 경우 이를 준공도면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분전반 회로표, 차단기 명칭 및 주요 전원계통 표시는 실제 사용상태와 일치하도록 정비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.

제 28 조(하자보수)

-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- ③ 전원공급 중단, 누전, 차단기 이상 등 병원 운영이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29 조(지체상금 및 공사중지)

-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- ② 환자안전, 병원운영상 긴급한 사유, 중대한 전기안전 위험 또는 설계서·안전수칙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작업중지나 작업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공사중지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0 조(출입·보안 및 일일 작업종료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병원에서 정한 출입·보안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 중 알게 된 환자정보, 의료정보 및 병원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승인 없이 환자·의료진 또는 병원 내부를 촬영하거나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매일 작업 종료 후 공사구역 및 주변 통로를 청소하고, 임시배선·공구·자재·폐기물을 안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.
- ④ 작업 종료 전 차단기 상태, 임시전원, 노출배선, 화재·감전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31 조(손해배상 및 원상복구)

-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시설, 전기설비, 의료장비, 환자, 보호자, 직원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철거·이동·변경한 시설물과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 32 조(해석 및 기타사항)

- ① 본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등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 - ②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.
 - ③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-